

< 일 러 두 기 >

- 법령명 : 식품원료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의 사용제한
- 제정일 : 2024년 7월 11일
- 최종개정일 : -
- 출처 :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(방문일 : 2024년 9월 20일)

# 식품원료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의 사용제한

1.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의1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.
2. 본 규정에서 정한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(Epigallocatechin gallate, EGCG) 원료는 녹차 찻잎을 추출, 분리 및 농축 등 정제 단계를 거쳐 얻은 것이다.
3. 전 항에서 얻은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 원료에서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의 함량은 건조중량으로 계산하여 90%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. 일일 섭취 제한량은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로 계산하여 300mg이다.